

울산 우정혁신도시 B1블록 (골드클래스)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233-399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주택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2.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없음	미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2.03.(화)	2026.02.13.(금)	2026.02.19.(목)	2026.02.25.(수)	2026.03.06(금)~ 2026.03.07.(토)	2026.03.09.(월)~ 2026.03.11.(수)

1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 제2조2의2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사용승인 2014. 04. 28.)으로, 임대무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우선분양전환 후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제4항(부칙<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의해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선분양전환 후 분양전환 포기세대의 일반분양으로 일부세대에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 만기가 도래되어 세대가 퇴거 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4년 04월 28일(10개동, 건물연수 11년경과) 사용검사된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무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이며, 공급금액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4364호 (2025.02.03.)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 당첨자에 한함, 임차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방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매월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가입
세대주 요건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 저축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 이 많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0조 제5항에 따라 산정)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추첨(1순위 당첨자 결정순차가 동일한 경우)	추첨

※ 1순위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하 동일)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순위순차제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순위순차제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oldclass.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03.(화)**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외국인 청약 불가)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5.02.0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본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무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였거나 공가인 세대)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4년 4월 28일 사용승인을 득한 국민주택이며, 주택도시기금(76.5143형 세대당 88,000,000원), (84.9600형 세대당 90,000,000원)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상환이 이루어진 일부 세대가 존재하니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세대)개방은 당첨자에 한하며, 방문예약제로 운영되오니 당첨자 본인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별도 보수공사없이 현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 당첨자에 한함, 임차인이 있는 세대의 경우 방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커뮤니티공간, 자전거보관소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주택과-4364호(2025.02.03.)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

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세대방문기간	계약체결
일 정	2026.02.13.(금)	2026.02.19.(목)	2026.02.25.(수)	2026.03.06(금)~ 2026.03.07.(토)	2026.03.09.(월)~ 2026.03.11.(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영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760, 골드클래스 입주자대표회의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며,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년자인 무주택자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 부 세 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청약관련 문의사항

- 본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해당 문의사항의 성격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또는 사업주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는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시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및 청약내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는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문의 사항	연락처 및 유의사항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신청 방법, 청약절차, 당첨자선정 및 추첨 등	1644-7445(청약홈 콜센터)
골드클래스(주)	단지 관련사항, 세대개방일정, 당첨자(예비입주자)서류 제출 및 계약금, 잔금 등	062-233-3999(골드클래스 광주사업소)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4800호 (2026.01.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760(골드클래스)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13층 10개동 총 478세대 중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 34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76.5143㎡ 12세대, 84.9600㎡ 22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민 주택	2026000022	01	76.5143	76	76.5143	22.8201	99.3344	51.6079	150.9423	63.0028	12	12
		02	84.9600	84	84.9600	25.2170	110.1770	57.3044	167.4814	69.957	22	22
	합계										34	34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x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 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금액-원)

NO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현임차인임대조건		
				합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만기일
1	76	105	402	323,500,000	32,350,000	291,150,000			
2			404	323,500,000	32,350,000	291,150,000			
3			503	327,000,000	32,700,000	294,300,000			
4			1101	332,000,000	33,200,000	298,800,000			
5			1102	332,000,000	33,200,000	298,800,000	157,500,000	265,000	2026-02-27
6			1203	330,000,000	33,000,000	297,000,000			
7		106	502	329,000,000	32,900,000	296,100,000	244,200,000	-	2026-07-30
8			704	331,500,000	33,150,000	298,350,000			
9			1303	326,500,000	32,650,000	293,850,000			
10		108	304	320,500,000	32,050,000	288,450,000			
11			503	327,000,000	32,700,000	294,300,000			
12			801	332,000,000	33,200,000	298,800,000			
13	84	102	303	363,500,000	36,350,000	327,150,000	190,800,000	205,000	2026-02-23
14			802	376,500,000	37,650,000	338,850,000			
15			1103	376,500,000	37,650,000	338,850,000	190,800,000	205,000	2026-06-22
16			1104	376,500,000	37,650,000	338,850,000	190,800,000	205,000	2026-06-22
17		103	201	356,000,000	35,600,000	320,400,000			
18			404	367,500,000	36,750,000	330,750,000			
19			903	377,000,000	37,700,000	339,300,000			
20		107	303	365,000,000	36,500,000	328,500,000			
21			304	365,000,000	36,500,000	328,500,000			
22			504	372,000,000	37,200,000	334,800,000			
23			701	375,000,000	37,500,000	337,500,000			
24			902	378,000,000	37,800,000	340,200,000			
25			1003	378,000,000	37,800,000	340,200,000			
26			1004	378,000,000	37,800,000	340,200,000			
27		109	403	367,500,000	36,750,000	330,750,000			
28			504	371,500,000	37,150,000	334,350,000			
29			604	374,000,000	37,400,000	336,600,000			
30			703	374,000,000	37,400,000	336,600,000			
31			1201	375,000,000	37,500,000	337,500,000			
32		110	502	371,000,000	37,100,000	333,900,000	190,800,000	205,000	2026-06-22
33			504	371,000,000	37,100,000	333,900,000			
34			1302	368,000,000	36,800,000	331,200,000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울산광역시 중구청(건축과-4364호) 분양전환승인된 분양전환금액을 적용 하였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에 표기된 현 임차인 임대조건의 만기일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기일 또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퇴거하기로 약정한 기일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명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 및 세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로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잔금납부 일정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당첨자 본인이 주택개방일(※당첨자에 한함)에 세대 내 시설물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물(보일러 벽지,장판,싱크대,세대열쇠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잔금 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본 계약체결 후 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 부과)
- 입주예정자는 입주 시 단지관리운영을 위한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영업소로 확인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에 대한 별도의 용자 지원 또는 대출 알선 계획은 없으며, 대출 관련 사항은 입주자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 부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순위 내 경쟁 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③<표1>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순위별 자격 요건			
	구 분	주택형	순위	자격요건
	국민주택	전 주택형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함. 1순위 당첨자 선정 순차 및 2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전용면적 40㎡ 초과</td><td>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td></tr></table>		구분	내용	전용면적 40㎡ 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구분	내용												
전용면적 40㎡ 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부부 간 중복 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후 신청분 무효 처리.]												
	<table><tr><th colspan="2">구분</th><th>내용</th></tr><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tr><td>부부와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table>		구분		내용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와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내용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와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5

청약신청 및 당첨자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25.(수) ~ 2026.03.06.(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2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정

구분	계약일정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6.03.09.(월)~ 2026.03.11.(수) (시간 : 10:00 ~ 16:00)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760, 골드클래스 입주자대표회의실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안내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2-074717	골드클래스(주)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입금방법 : 101동 101호 홍길동 당첨자의 경우 상기 계좌 입금시 입금자명 홍길동101-101으로 입금)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오니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 통보하지 않음(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잔금 대출관련 내용은 관련정책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주체를 통한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자금(주택도시기금)

(단위:천원)

구분	76	84
주택도시기금	88,000	90,000

· 용자금은 당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잔금 납부 시 주택도시기금 전액을 일시납 또는 해당 은행에서 계약자 명의로 대한 대출(당사 용자금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하여야 합니다.

· 용자금 대환을 희망하시는 계약자는 용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지정은행(향후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에 내방하시어 용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3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용자금 채무자 명의를 당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용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용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주택도시기금)상환(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습니다. · 용자금은 일시불 상환 가능하며 일시불 상환 시 대환절차(근저당 설정등기)는 불필요합니다. 세대별 용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105동 1102호 호실 기금해당사항 없음.

■ 당첨자 당첨세대 방문 확인 계약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모집을 하는 주택으로 계약체결 이전에 실제 계약대상인 세대를 확인한 이후에 계약가능.
- 본 아파트는 당첨자는 당첨자 계약체결하시기 이전에 아래의 기간동안 실제 당첨된 세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세대방문기간 : 2026.03.06.(금). ~ 2026.03.07.(토)

■ 입주지정기간 : 2026년 03월 12일 ~ 04월 11일까지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되어 세대가 퇴거 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제3차 대리시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분증(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외 대리인 접수 불가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2.03.(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단지 조감도 및 배치도

조감도



배치도



■ 세대 평면도

※ 본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평면도임으로 실제 당첨 호실 방문 후 정확한 세대 구조를 확인하여야 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76	84
세 대 평면도		